

#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274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「도서관법」 및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과의  
연관 확보를 위해 내용을 반영하고 평창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 
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행사 활성화를 위한 시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10조제4항)

나.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및 역할 조정(안 제19조제2항,제3항)

다. 독서진흥 활성화를 위한 내용정비(안 제25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독서문화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4. 2. 28. ~ 3. 19.결과, 제출된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4904(2024. 3. 26.)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 4. 30.)]

##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 본문 중 “3 이내로 하되, 해당연도 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”를 “7 이내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수”를 “「도서관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0명”을 “8명”으로, “위원장과”를 “위원장은 도서관 소관 부서장이 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도서관담당과 문화·교육·도서관분야”를 “문화·교육·도서관분야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도서문화용품”을 “상품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**도서관 명칭 및 위치** (제3조제2항 관련)

| 명 칭        | 위 치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평창군립대화도서관  | 대화면 남산2길 27    |
| 평창군립봉평도서관  | 봉평면 기풍4길 10    |
| 평창군립진부도서관  | 진부면 석두로 12-8   |
| 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 |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10조(기증 및 교환 등) ① ~ ③<br/>(생 략)</p> <p>④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<br/>위는 연간 전체보유 장서의 100<br/>분의 3 이내로 하되, 해당연도<br/><u>수집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<br/>과할 수 없다.</u> 다만, 천재지변,<br/>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에 따<br/>른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제19조(설치 · 구성) ① <u>군수</u>는 도<br/>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<br/>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자<br/>문하는 평창군 도서관운영위원<br/>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<br/>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<br/>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<br/>으로 구성하되, <u>위원장과</u> 부위<br/>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은 <u>도서관담당과 문화 ·<br/>교육 · 도서관분야</u>의 전문인사<br/>및 이용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<br/>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</p> | <p>제10조(기증 및 교환 등) ① ~ ③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br/>-----<br/>--- <u>7 이내로 한다.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19조(설치 · 구성) ① 「<u>도서관<br/>법</u>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<u>군수</u>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 <u>8명</u> -----<br/>----- <u>위원장은 도서관<br/>소관 부서장이 되고,</u> -----.</p> <p>③ ----- <u>문화 · 교육 · 도서관분<br/>야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|

축하되, 특정 성이 전체 위원의  
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④·⑤ (생략)

제2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.

② (생략)

제25조(표창 등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및 도서관화용품,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서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표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상품 -----  
-----.

## 신·구조문대비표(별표 1)

| 현 행  | 개 정 안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<p>[별표 1]<br/><b>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제2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대화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화면 남산2길 27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봉평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봉평면 기풍4길 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진부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부면 석두로 12-8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 칭            | 위 치 | 평창군립대화도서관 | 대화면 남산2길 27 | 평창군립봉평도서관 | 봉평면 기풍4길 10 | 평창군립진부도서관 | 진부면 석두로 12-8 | <p>[별표 1]<br/><b>도서관 명칭 및 위치(제3조제2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위 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대화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대화면 남산2길 27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봉평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봉평면 기풍4길 1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창군립진부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진부면 석두로 12-8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color: blue;">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명 칭 | 위 치 | 평창군립대화도서관 | 대화면 남산2길 27 | 평창군립봉평도서관 | 봉평면 기풍4길 10 | 평창군립진부도서관 | 진부면 석두로 12-8 | 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 |
| 명 칭  | 위 치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대화도서관  | 대화면 남산2길 27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봉평도서관  | 봉평면 기풍4길 10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진부도서관  | 진부면 석두로 12-8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명 칭  | 위 치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대화도서관  | 대화면 남산2길 27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봉평도서관  | 봉평면 기풍4길 10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진부도서관  | 진부면 석두로 12-8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 평창군립대관령도서관   | 대관령면 대관령로 83-2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|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
# 관계법령 발취

**도서관법**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**제34조(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)**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.

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도서관법 시행령**[시행 2023. 9. 12.] [대통령령 제33712호, 2023. 9. 12., 일부개정]

**제33조(도서관인력·시설·자료)**

③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.

■ **도서관법 시행령 [별표 7]**

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(제33조제3항 관련)

1.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

가.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

나.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

다.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

2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

가.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

나. 훼손, 파손 또는 오손

다. 불가항력의 재해·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

라.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(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. 이하 제4호에서 같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3.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.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·이관·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.

독서문화진흥법[시행 2023. 5. 4.] [법률 제18857호, 2022. 5. 3., 일부개정]

#### 제12조(독서의 달 행사 등)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, 독서 관령 행사, 포상·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

## 4. 작성자
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020     |